

제 호

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

1. 연구소명:

(소속 기업명):

2. 주 소:

3. 인정연월일:
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직인